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4,058,576	17,221,757
일반회계	499,828,702	14,994,861
특별회계	74,229,874	2,226,896
공기업특별회계	43,771,430	1,313,14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518,714	645,56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252,716	667,581
기타특별회계	30,458,444	913,753
주택사업특별회계	24,225	72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72,775	59,183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914,353	177,431
주차장특별회계	1,924,927	57,748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20,622,164	618,66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 :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